제32회

기본과정 (3주차)

상담 🏗 02) 2135-1806

공인중개시법령 및 실무



- 01. 법인이 아닌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허용된 겸업업무를 모두 영위할 수 있다. (제22회) (0, X)
- 02.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에 부수되는 용역업으로서, 이사업체를 '운영'할 수 있다. (제 20회 변형) (0, X)
- 03.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에 부수되는 도배 및 이사업체를 '운영'할 수 있다. (제22회)(제25회) (0, X)
- 04.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'주택'의 '분양대행'을 할 수 있다. (제20회)(제26회) (0, X)
- 05.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'주택용지'에 대한 '분양대행'을 할 수 있다. (제31회) (0, X)
- 06.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국제징수법상 공매대상 '동산'에 대한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. (제 31회) (0, X)
- 07.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제한을 위반할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 (제20회) (0. X)
- 08.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인을 고용한 경우 고용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. (제22 회 변형) (0, X)
- 09.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. (제28회) (0, X)
- 10. 소속공인중개사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·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 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. (제23회)(제26회)(제28회) (0, X)
- 11. 소속공인중개사 乙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소속공인중개사 乙의 직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. (제31회) (0, X)
- 12.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'추정'한다. (제26회) (0, X)
- 13. 중개보조원의 행위가 이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업무정지처분은 개업 공인중개사만 받는다. (제20회)(제25회) (0, X)

- 14.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"공인중개사사무소" 또는 "부동산중개"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. (제31회) (0, X)
- 15.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'분사무소'의 옥상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법인의 '대표자'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해야 한다. (제22회) (0, X)
- 16.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지체없이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. (제25회) (0, X)
- 17.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안에 실무교육수료증을 게시해야 한다. (제19회) (0, X)
- 18.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·광고를 하려는 경우, 중개사무소의 명칭은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. (제31회) (0, X)
- 19.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. (제30회) (0, X)
- 20.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'외'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'이전 전'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. (제23회) (0, X)
- 21.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'외'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의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거나, 중개 사무소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. (제31회) (0, X)
- 22.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'이전 전'의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. (제23회)(제28회)(제29회) (0, X)
- 23.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주된 사무소와 그 분사무소는 같은 시·군·구에 둘 수 없다. (제22회)(제23회 변형) (0, X)
- 24.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분사무소 설치신고서를 '주된 사무소'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 (제22회)(제23회)(제27회) (0, X)
- 25. 법인의 분사무소 이전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할 '분사무소'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 청에 하면 된다. (제31회) (0, X)
- 26.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. (제22회)(제23회 변형) (0, X)
- 27.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'업무개시 전'에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. (제25회)(제29회) (0, X)

- 28. 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인장등록을 하여야 한다. (제31회) (0, X)
- 29.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'분사무소' 소재지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. (제31회) (0, X)
- 30.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. (제21회)(제23회) (0, X)
- 31.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할 인장은 원칙적으로 가로·세로 각각 10mm 이상 40mm 이내인 인 장이어야 한다. (제21회) (0, X)
- 32.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'10일'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 야 한다. (제21회)(제24회)(제25회)(제27회)(제31회) (0, X)
- 33.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「상업등기규칙」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하고, 「상업등기규칙」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없다. (제31회) (0, X)
- 34.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다. (제31회) (0, X)
- 35. 개업공인중개사는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. (제26회) (0, X)
- 36. 질병이나 징집, 취학을 이유로 하는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. (제27회 변형) (0, X)

♥수고하셨습니다^^

♥ 2021년 필승합격입니다!!!~~~^^*♥

```
01-X (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경매' 공매물건에 대한 알선' 대리를 할 수 없다) //
02-0 //
03-X (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으며, 도배' 이사업체의
    "알선"을 할 수 있다) //
04-0 //
05-X (주택"용지"의 분양대행은 법 제14조 업무가 아니다) //
06-X (동산이 아니라, "부동산"에 대한 입찰대리를 할 수 있다) //
07-0 //
08-X (업무개시전까지 고용신고를 하여야 한다) //
09-X (10일 이내에 종료신고를 하여야 한다) //
10-0 //
11-X (직무교육이 아니라, "실무교육" 수료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) //
12-X ("간주"한다) //
13-0 //
14-0 //
15-X (분사무소는 "책임자"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) //
16-0 //
17-X (게시의무가 있는 것은 등록증(신고필증), 자격증, 보증증서, 수수료한도표이다)//
18-X (중개대상물 표시) 광고물에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, 연락처, 명칭,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등을
    표기하여야 하다) //
19-0 //
20-X (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) //
21-X (변경교부가 아니라 재교부하여야 한다) //
22-X (이전 후의 등록관청) //
23-0 //
24-0 //
25-X (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하여야 한다) //
26-X (있다) //
27-0 //
28-X (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의무가 없다) //
29-X (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하여야 한다) //
30-0 //
31-X (7mm 이상 ~30mm 이하이다) //
32-X (7일 이내) //
33-X (법인은 인감증명서 제출로 인장등록에 갈음한다) //
34-0 //
35-0 //
36-0 //
```

♥(다음카페) 김상진의 공인중개사법♥